

이동식 해양골착구조물 규칙 개정(안)

(외부의견조회용)

2019. 8.



기 관 규 칙 개 발 팀

- 주요 개정 내용 -

(1) 2020.01.01.일자 시행사항(건조일 기준)

- 동등효력 : 선급기술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등효력에 대한 요건을 통일함.
- 부록의 인용 : 규칙에서 언급함.
- MSC Res.407(96) 반영 : FSS Code의 포말소화장치의 인정
- IACS UR D 11 반영 : 편제 수정
- MSC Res.435(98) 반영 : 굴착바닥판의 소화장치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장 일반사항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절 일반사항</p> <p>101. 적용</p> <p>1. 부터 5. <생략></p> <p>6.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굴착장치를 우리 선급에 등록하는 경우, 굴착장치는 <u>지침</u>에 따른다. 【지침 참조】</p> <p>102.부터 103. <생략></p> <p>104. 동등효력 및 신기술</p> <p>1. 이 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체구조, 의장 배치 및 치수를 갖는 구조물이라도 우리 선급이 이 규칙에 적합하다는 것과 동등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이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.</p> <p>2. 현재 적용할 수 있는 규칙에 적합하고 당시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를 근간으로 신기술에 대하여 특별히 고려하여 우리 선급이 승인하는 경우 부력, 승강장치, 구조배치, 기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신기술을 적용한 구조물을 등록할 수 있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장 일반사항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절 일반사항</p> <p>101. 적용</p> <p>1. 부터 5. <생략></p> <p>6.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굴착장치를 우리 선급에 등록하는 경우, 굴착장치는 <u>부록 1</u>에 따른다. 【지침 참조】</p> <p>101.부터 103. <생략></p> <p>104. 동등효력</p> <p><u>이 규칙에 만족하지 않거나 적용할 수 없는 대체설계 및 신기술의 동등효력에 대해서는 선급 및 강선규칙 1편 1장 104.를 따른다</u></p>	<p>- 부록의 적용을 규칙에서 인용함.<해양수산부 요청>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0 장 방화구조, 탈출설비 및 소화장치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절부터 제 2 절 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3 절 소화장치</p> <p>301. 부터 303. <생략></p> <p>304. 굴착바닥판의 소화장치</p> <p>1. 부터 2. <생략></p> <p>3. 고정식 물분무소화장치를 굴착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. 최소 분무량은 $20.4 \ell/m^2 \cdot \text{min}$ 이상이어야 한다.</p> <p>4. 굴착지역 및 유정시험지역에는 적어도 2개의 사수 및 분무 겸용노즐을 설치하여야 한다. 각 방사총(fire monitor)의 최소용량은 시간당 100 m^3 이상이 LPG측에서 작동하는 방사총은 접근할 수 있는 보호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0 장 방화구조, 탈출설비 및 소화장치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절부터 제 2 절 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3 절 소화장치</p> <p>301. 부터 303. <생략></p> <p>304. 굴착바닥판의 소화장치</p> <p>1. 부터 2. <생략></p> <p>3. 굴착바닥판은 고정식 물분무장치로 보호되어야 한다. 고정식 물분무장치는 최소 $20.4 \text{ L}/m^2 \cdot \text{min}$ 의 분무량을 굴착바닥판 및 비상차단장비, 취약구조부재, 방화벽과 같은 관련 설비까지 도달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.</p> <p>4. 3항의 대체방법으로, 최소 $1,900 \text{ L}/\text{min}$의 유량과 1 MPa의 압력으로 방출되는 사수 및 분무겸용의 고정된 2개 이상의 모니터(monitor)를 설치할 수 있으며, 보호되는 모든 지역과 설비는 서로 멀리 떨어진 2개 이상의 모니터(monitor)에 의해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.</p> <p>5. 3항 및 4항의 소화장치는 보호되는 지역 외부에 위치한 작동장소로부터 수동 방출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하고 작동에 필요한 모든 밸브는 보호지역 외부에 위치하여야 한다. 선급이 인정한 경우, 자동방출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.</p> <p>6. 노즐, 배관, 관부착품 및 관련 부품들은 $925 \text{ }^\circ\text{C}$까지의 온도에 노출되어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.</p> <p>7. 주 소화펌프의 용량이 소화주관 및 물분무장치에 요구되는 유량과 압력으로 동시에 공급하기에 충분한 경우, 주 소화펌프를 고정식 물분무장치의 물 공급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.</p>	<p><MSC Res. 435(98), 10항></p> <p>- MODU Code 9.8.1</p> <p>- MODU Code 9.8.1</p> <p>- 5항으로 내용이동</p> <p>- MODU Code 9.8.2</p> <p>- MODU Code 9.8.3</p> <p>- MODU Code 9.8.4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4 절 헬리콥터 설비용 소화장치</p> <p>401. 일반 <생략> 402. 헬리콥터 갑판 및 연료보급설비</p> <p><u>1. 호스 및 노즐 : 승인된 분사 및 분무겸용 노즐(방사기 포함)과 헬리콥터 갑판의 어느 곳에도 닿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의 호스를 각각 2개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.</u></p> <p>2. 이동식 소화기 : 2개 이상의 분말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, 이들의 총용량은 45 kg 이상이어야 한다. 다만 각각의 용량은 9 kg 이상이어야 한다.</p> <p>3. 보조 소화장치 : 총용량이 18 kg 이상의 CO₂ 소화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. 이 보조 소화장치는 주소화장치와 동시에 손상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, 이들 소화기 중 적어도 하나는 헬리콥터가 갑판의 어느 곳에 있더라도 헬리콥터의 기관구역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장치하여야 한다. 이 보조 소화장치는 적절한 호스 및 부속품을 비치한 소화전으로 대신할 수 있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4 절 헬리콥터 설비용 소화장치</p> <p>401. 일반 <현행과 동일> 403. 소화장치</p> <p>1. 호스 및 노즐 : 승인된 분사 및 분무겸용 노즐(방사기 포함)과 헬리콥터 갑판의 어느 곳에도 닿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의 호스를 각각 2개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.</p> <p><u>1. 헬리콥터 갑판에 근접하여 다음의 소화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헬리콥터 갑판의 접근수단 근처에 비치하여야 한다.</u></p> <p>(1) 이동식 소화기</p> <p><u>(가) 주소화장치</u> : 2개 이상의 분말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, 이들의 총용량은 45 kg 이상이어야 한다. 다만 각각의 용량은 9 kg 이상이어야 한다.</p> <p><u>(나) 보조소화장치</u> : 총용량이 18 kg 이상의 CO₂ 소화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. 이 소화장치는 주소화장치와 동시에 손상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, 이들 소화기 중 적어도 하나는 헬리콥터가 갑판의 어느 곳에 있더라도 헬리콥터의 기관구역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장치하여야 한다. 이 보조 소화장치는 적절한 호스 및 부속품을 비치한 소화전으로 대신할 수 있다.</p>	<p>- 1항 (2)호 (나)로 이동함</p> <p>- MODU Code 9.17.4</p> <p>- 편제 수정 (UR D11.4.1) : 분말소화기와 CO2 소화기를 이동식 소화기의 하부조항으로 함.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4. 고정식 포말소화장치 :</p> <p>(1) 모니터(monitor) 또는 포말을 형성시킬 수 있는 소화지관으로 된 적절한 포말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 그 능력은 $6 \ell/m^2 \cdot \text{min}$ (수성막포(Aqueous Film Forming Foam) 또는 불화단백포(Film Forming Fluoroprotein Foam)의 경우에는 $4.1 \ell/m^2 \cdot \text{min}$)이상의 비율로 적어도 5분간 보호구역(헬리콥터의 주회전날개(main rotor)에서 꼬리회전날개(tail rotor)까지의 회전원주외곽 길이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면적)에 포말용액을 분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.</p> <p>(2) 소화장치의 기동으로부터 30초 이내에 최소발포 비율에서의 포말방출이 시작되어야 한다. 또한, 소화주관의 사용 중에도 포말소화장치를 지장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.</p> <p>(3) 포말용액은 해수와 함께 사용상 적합하여야 하고, 국제해사기구에서 허용한 것(국제민간항공기구 공항실무지침, 제1편 - 구조 및 소화, 제8편- 소화제 특성, 제8.1.5항 - 포말특성 표 8-1 레벨 'B'를 참조)보다 나은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</p> <p>5. 부터 8. <생략></p> <p><이하 생략></p>	<p>(2) 고정식 소화장치</p> <p>(가) 고정식 포말소화장치 :</p> <p>(a) 모니터(monitor) 또는 포말을 형성시킬 수 있는 소화지관으로 된 적절한 포말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 그 능력은 $6 \ell/m^2 \cdot \text{min}$(수성막포(Aqueous Film Forming Foam) 또는 불화단백포(Film Forming Fluoroprotein Foam)의 경우에는 $4.1 \ell/m^2 \cdot \text{min}$)이상의 비율로 적어도 5분간 보호구역(헬리콥터의 주회전날개(main rotor)에서 꼬리회전날개(tail rotor)까지의 회전원주외곽 길이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면적)에 포말용액을 분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.</p> <p>(b) 소화장치의 기동으로부터 30초 이내에 최소발포 비율에서의 포말방출이 시작되어야 한다. 또한, 소화주관의 사용 중에도 포말소화장치를 지장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.</p> <p>(c) 포말용액은 해수와 함께 사용상 적합하여야 하고, 국제해사기구에서 허용한 것(국제민간항공기구 공항실무지침, 제1편 - 구조 및 소화, 제8편- 소화제 특성, 제8.1.5항 - 포말특성 표 8-1 레벨 'B'를 참조)보다 나은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</p> <p>(나) 고정식 소화수장치 : 승인된 분사 및 분무겸용 노즐과 헬리콥터 갑판의 어느 곳에도 닿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의 호스를 각각 2개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.</p> <p>(3) (2)호 (가)의 요건을 대신하여 FSS Code의 요건에 적합한 포말소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.</p> <p>2. 부터 5. <현행과 동일></p> <p><이하 현행과 동일></p>	<p>- 편제 수정 (UR D11.4.1) : 고정식 포말소화장치와 고정식 소화수장치를 고정식 소화장치의 하부조항으로 함.</p> <p>- 1항으로부터 이동함.</p> <p><MSC Res. 407(96)></p> <p>- MODU Code 9.17.4.6</p>

이동식 해양굴착구조물 규칙 개정(안)

(최종)

제7장 위험구역에 설치되는 기관 및 전기설비

2019. 12.



기 관 규 칙 개 발 팀

2020.01.01.일자 시행사항

(건조일 기준)

- Res.MSC.435(98) 반영
 - DP 시스템의 연결 해제 및 비상차단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(차단 로직 시스템 및 시스템의 독립성)을 명확히 함.
 - 위험구역 인증 장비의 수리, 유지보수 및 정밀 검사를 수행하는 자격에 대한 요건과 위험구역에 설치되는 전기장비의 등록부 비치에 대한 요건을 신설함.

- 위험구역에 적용되는 참고 표준을 최신의 IEC 국제표준으로 업데이트함.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7 장 위험구역에 설치되는 기관 및 전기설비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절 - 제 3 절 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4 절 전기기기에 대한 비상정지</p> <p>401. 굴착작업에 의한 비상상태시의 정지</p> <p>1. <생략></p> <p>2. 위치유지의 유일한 수단으로 자동위치제어만을 갖춘 구조물의 경우, <u>유정의 무결성(integrity)을 유지하기 위해 자동위치제어의 조작성과 관련된 기관장치 및 전기설비의 선택정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려할 수 있다.</u></p> <p>3. - 5. <생략></p> <p>402. <생략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7 장 위험구역에 설치되는 기관 및 전기설비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절 - 제 3 절 <현행과 동일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4 절 전기기기에 대한 비상정지</p> <p>401. 굴착작업에 의한 비상상태시의 정지</p> <p>1. <현행과 동일></p> <p>2. 위치유지의 유일한 수단으로 자동위치제어만을 갖춘 구조물의 경우, <u>유정의 무결성(integrity)을 유지하기 위해 자동위치제어의 조작성과 관련된 기관장치 및 전기설비의 선택정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려할 수 있다. 자동위치제어설비(이하 “DP 시스템”이라 한다.)를 사용하는 구조물의 경우, DP 시스템의 조작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기 및 장비의 연결 해제 또는 비상차단(shutdown)은 유정의 무결성(the integrity of the well)과 위치 유지 능력(station keeping capability)에 대한 작동 제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차단 로직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. DP 시스템의 작동에 필요한 발전기 및 관련 전원 공급 장치의 비상차단은 위치를 유지하면서 가스 탐지 경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그룹으로 구분되어야 한다.</u></p> <p>3. - 5. <현행과 동일></p> <p>402. <현행과 동일></p>	<p>(개정)</p> <p>- Res.MSC.435(98)을 반영하여, DP 시스템의 연결 해제 및 비상차단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(차단 로직 시스템 및 시스템의 독립성)을 명확히 함.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5 절 위험구역에 설치되는 전기설비</p> <p>501. 전기설비의 선정 및 설치</p> <p>1. 운전상의 목적에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위험구역에 전기설비 및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장에서 규정한 형식의 장비 및 케이블만 설치할 수 있다. 위험구역에서의 전기설비 및 케이블의 선정 및 설치는 다음 표준에 따라야 한다.</p> <p>(1) <u>KS C IEC 61892-1</u>: 이동식 및 고정식 해양구조물의 전기설비 - 제1부: 일반 요구사항 및 조건</p> <p>(2) <u>KS C IEC 61892-2</u>: 이동식 및 고정식 해양구조물의 전기설비 - 제2부: 시스템 설계</p> <p>(3) <u>KS C IEC 61892-3</u>: 이동식 및 고정식 해양구조물의 전기설비 - 제3부 : 전기장치</p> <p>(4) IEC 61892-4: 이동식 및 고정식 해양구조물의 전기설비 - 제4부 : 케이블</p> <p>(5) <u>KS C IEC 61892-5</u>: 이동식 및 고정식 해양구조물의 전기설비 - 제5부 : 이동용 전기장치</p> <p>(6) <u>KS C IEC 61892-6</u>: 이동식 및 고정식 해양구조물의 전기설비 - 제6부 : 설치의 일반 요구사항</p> <p>(7) <u>KS C IEC 61892-7</u>: 이동식 및 고정식 해양구조물의 전기설비 - 제7부 : 위험장소의 일반요구사항</p> <p>2. <생략></p> <p>502. 전기설비의 보호</p> <p>1. 위험구역에 설치되는 전기설비는 다음 표준에 따라 제작, 시험, 표시 및 설치되어야 하고,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적절한 시험 및 검사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시험을 하여야 한다.</p> <p>(1) <u>KS C IEC 60079-4</u>: 방폭 기기 - 제4부: 발화온도 시험방법</p> <p>(2) IEC 60079-4A: 1970 방폭 기기 - 제4부: 발화온도 시험방법 - 보충판1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5 절 위험구역에 설치되는 전기설비</p> <p>501. 전기설비의 선정 및 설치</p> <p>1. 운전상의 목적에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위험구역에 전기설비 및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장에서 규정한 형식의 장비 및 케이블만 설치할 수 있다. 위험구역에서의 전기설비 및 케이블의 선정 및 설치는 다음 표준에 따라야 한다.</p> <p>(1) KS C IEC 61892-1: 이동식 및 고정식 해양구조물의 전기설비 - 제1부: 일반 요구사항 및 조건</p> <p>(2) KS C IEC 61892-2: 이동식 및 고정식 해양구조물의 전기설비 - 제2부: 시스템 설계</p> <p>(3) KS C IEC 61892-3: 이동식 및 고정식 해양구조물의 전기설비 - 제3부 : 전기장치</p> <p>(4) IEC 61892-4: 2007, 이동식 및 고정식 해양구조물의 전기설비 - 제4부 : 케이블</p> <p>(5) KS C IEC 61892-5: 이동식 및 고정식 해양구조물의 전기설비 - 제5부 : 이동용 전기장치</p> <p>(6) KS C IEC 61892-6: 이동식 및 고정식 해양구조물의 전기설비 - 제6부 : 설치의 일반 요구사항</p> <p>(7) KS C IEC 61892-7: 이동식 및 고정식 해양구조물의 전기설비 - 제7부 : 위험장소의 일반요구사항 <u>위험구역</u></p> <p>2. <현행과 동일></p> <p>502. 전기설비의 보호</p> <p>1. 위험구역에 설치되는 전기설비는 다음 표준에 따라 제작, 시험, 표시 및 설치되어야 하고,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적절한 시험 및 검사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시험을 하여야 한다.</p> <p>(1) KS C IEC 60079-4: 방폭 기기 - 제4부: 발화온도 시험방법</p> <p>(2) IEC 60079-4A: 1970 방폭 기기 - 제4부: 발화온도 시험방법 - 보충판1</p>	<p>(개정)</p> <p>- 위험구역에 적용되는 참고 표준을 최신의 IEC 국제표준으로 업데이트함.</p> <p>(개정)</p> <p>- IEC 60079-4:1975, IEC 60079-4A:1970, IEC/TR 60079-12:1978 및 IEC/TR 60079-20:1996은 IEC 60079-20-1:2010으로 대체됨. 이후 IEC 60079-20-1:2010은 ISO/IEC 80079-20-1:2017로 대체됨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(3) KS C IEC 60079-10: 방폭 기기 - 제10부: 폭발 위험 장소의 구분 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(4) IEC/TR 60079-12: 1978 방폭 기기 - 제12부: 실험에 의한 최대 소염(safe gap) 및 최소 점화전류에 따른 가스 와 공기 혼합물 또는 증기와 공기 혼합물의 구분</p> <p>(5) IEC/TR 60079-13: 1982-01 방폭 기기 - 제13부: 압력으로 보호되는 방 또는 건물의 구조 및 사용</p> <p>(6) KS C IEC 60079-14: 방폭 기기 - 제14부: 폭발 위험 장소에서의 전기 설비</p> <p>(7) IEC/TR 60079-16: 1990 방폭 기기 - 제16부: 분석실(analyser room)의 보호를 위한 인위적 통풍</p> <p>(8) IEC 60079-17: 2007 방폭 기기 - 제17부: 전기설비의 검사 및 보수정비</p> <p>(9) IEC 60079-19: 2006-10 방폭 기기 - 제19부: 전기설비 수리, 분해 검사 및 교정</p> <p>(10) IEC 60079-20: 1996 방폭 기기 - 제20부: 전기설비의 사용과 관련된 가연성 가스 및 증기에 대한 자료</p> <p>(11) IEC 60079-25: 2003 방폭 기기 - 제25부: 본질안전 장치</p> <p>(12) IEC 60079-27: 2008 방폭 기기 - 제16부: 필드버스(fieldbus) 본질안전개념 (FISCO)</p> <p>(13) KS C IEC 60079-28: 폭발분위기 - 제28부: 광학 방사용 장비 및 전송 시스템의 보호</p>	<p>(3) KS C IEC 60079-10: 방폭 기기 - 제10부: 폭발 위험 장소의 구분 (1) IEC 60079-10-1, 폭발성 분위기 - 제11부: 구역의 분류 - 폭발성 가스 분위기 (2) IEC 60079-11, 폭발성 분위기 - 제11부: 본질안전 "i"에 의한 장비 보호</p> <p>(4) IEC/TR 60079-12: 1978 방폭 기기 - 제12부: 실험에 의한 최대 소염(safe gap) 및 최소 점화전류에 따른 가스 와 공기 혼합물 또는 증기와 공기 혼합물의 구분</p> <p>(5)(3) IEC/TR 60079-13: 1982-01 방폭 기기 - 제13부: 압력으로 보호되는 방 또는 건물의 구조 및 사용 IEC 60079-13, 폭발성 분위기 - 제13부: 가압실 "p" 및 인위적 통풍실 "v"에 의한 장비 보호</p> <p>(6)(4) KS C IEC 60079-14: 방폭 기기 - 제14부: 폭발 위험 장소에서의 전기 설비 IEC 60079-14, 폭발성 분위기 - 제14부: 전기설비의 설계, 선택 및 설치</p> <p>(7)(5) IEC/TR 60079-16: 1990 방폭 기기 - 제16부: 분석실 (analyser(s) room houses)의 보호를 위한 인위적 통풍</p> <p>(8)(6) IEC 60079-17: 2007 방폭 기기, 폭발성 분위기 - 제17부: 전기설비의 검사 점검 및 보수정비 유지보수</p> <p>(9)(7) IEC 60079-19: 2006-10 방폭 기기, 폭발성 분위기 - 제19부: 전기설비 수리, 분해검사 분해점검 및 교정</p> <p>(10) IEC 60079-20: 1996 방폭 기기 - 제20부: 전기설비의 사용과 관련된 가연성 가스 및 증기에 대한 자료</p> <p>(11)(8) IEC 60079-25: 2003 방폭 기기, 폭발성 분위기 - 제25부: 본질안전 장치</p> <p>(12) IEC 60079-27: 2008 방폭 기기 - 제16부: 필드버스(fieldbus) 본질안전개념 (FISCO)</p> <p>(13)(9) KS C IEC 60079-28: 폭발분위기, 폭발성 분위기 - 제28부: 광학 방사용 장비 및 전송 시스템의 보호</p>	<p>- IEC 60079-10:2002는 IEC 60079-10-1:2008로 대체됨. 이후 IEC 60079-10-1:2008은 IEC 60079-10-1:2015로 최종 개정됨</p> <p>- IEC/TR 60079-13: 1981은 몇 번의 개정을 거쳐 IEC 60079-13:2017으로 최종 개정됨.</p> <p>- IEC 60079-27:2008은 IEC 60079-11:2011 및 IEC 60079-25:2010 대체됨.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(14) IEC 60079-29-1: 2007 방폭 기기 - 제29-1부: 가스탐지기 - 가연성 가스탐지기의 성능요건</p> <p>(15) IEC 60079-29-2: 2007 방폭 기기 - 제29-2부: 가스탐지기 - 가연성 가스 및 산소 탐지기의 선정, 설치, 사용 및 보수정비</p> <p>(16) KS C IEC 60079-30-1: 방폭전기기계 기구-제30-1부: 전기저항 트레이스 히터-일반 및 시험요구사항</p> <p>(17) KS C IEC 60079-30-2: 방폭전기기계기구 30-2부: 전기 저항 트레이스 히터 설계, 시공 및 유지를 위한 응용 가이드</p> <p><신설></p> <p>2. <생략>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3. - 8. 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6 절 <생략></p>	<p>(14)(10) IEC 60079-29-1: 2007 방폭 기기, 폭발성 분위기 - 제29-1부: 가스탐지기 - 가연성 가스탐지기의 성능요건</p> <p>(15)(11) IEC 60079-29-2: 2007 방폭 기기, 폭발성 분위기: - 제29-2부: 가스탐지기 - 가연성 가스 및 산소 탐지기의 선정, 설치, 사용 및 보수정비</p> <p>(16)(12) KS C IEC/IEEE 60079-30-1: 방폭전기기계 기구, 폭발성 분위기 - 제30-1부: 전기저항 트레이스 히터 - 일반 및 시험요구사항</p> <p>(17)(13) KS C IEC/IEEE 60079-30-2: 방폭전기기계기구, 폭발성 분위기 - 30-2부: 전기 저항 트레이스 히터 설계, 시공 및 유지를 위한 응용 가이드</p> <p>(14) ISO/IEC 80079-20-1, 폭발성 분위기 - 제20-1부: 가스 및 증기 분류를 위한 재료 특성 - 시험 방법 및 데이터</p> <p>2. <현행과 동일></p> <p>3. 위험구역 인증 장비에 대한 수리, 유지보수 및 분해점검(overhaul)은 적절한 국제 표준에 따라 적합한 자격을 갖춘 인원이 수행해야 한다.</p> <p>4. 장비에 대한 설명, 적용 가능한 보호등급 및 정격을 포함하여 지정된 위험구역에 설치되는 전기장비의 목록을 유지해야 한다.</p> <p>3. - 8. 5. - 10. <현행과 동일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6 절 <현행과 동일></p>	<p>- IEC 60079-30-1:2007는 IEC/IEEE 60079-30-1: 2015로 대체됨.</p> <p>- IEC 60079-30-2:2007는 IEC/IEEE 60079-30-2: 2015로 대체됨.</p> <p>(신설)</p> <p>- Res.MSC.435(98)을 반영하여, 다음 조건들을 신설함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위험구역 인증 장비의 수리, 유지보수 및 정밀 검사를 수행하는 자격에 대한 요건. • 위험구역에 설치되는 전기장비의 등록부 비치에 대한 요건.

이동식 해양굴착구조물 규칙 개정(안)

(제2장 선급등록 및 검사)

(외부의견 조회용)



- 주요 개정 내용 -

(1) 2020.01.01일자 시행사항 (검사신청일 기준)

- IACS UR Z15 (Rev.3 May 2019) 개정사항 반영
- CoC(지적사항)으로 통일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2 장 선급등록 및 검사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절 일반사항</p> <p>101. 일반사항 <생략></p> <p>102. 용어의 정의</p> <p>1.~ 12. <생략></p> <p>13. 신속하고 완전한 수리(prompt and thorough repair) 신속하고 완전한 수리라 함은 당해 검사 시 완료하는 영구수리로서, 검사원이 만족하고 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<u>선급유지조건 또는 지적사항</u>도 남기지 않는 수리를 말한다.</p> <p>14. ~ 16. <생략></p> <p>103. 수리</p> <p>1. ~ 2. <생략></p> <p>3. 1항에 명시된 선체구조에서 발견된 손상이 격리된 것이고 선체구조의 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국부적인 것인 경우 검사원은 국제선급연합회(IACS)의 절차요건(PR) No.35 (Procedure for Imposing and Clearing Recommendation/Condition of Class)에 따라 풍우밀 또는 수밀보전성을 다시 확보하기에 적합한 임시수리를 하고 기한을 정하여 <u>지적사항/선급유지조건</u>을 지정할 수 있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2 장 선급등록 및 검사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절 일반사항</p> <p>101. 일반사항 <현행과 동일></p> <p>102. 용어의 정의</p> <p>1.~ 12. <현행과 동일></p> <p>13. 신속하고 완전한 수리(prompt and thorough repair) 신속하고 완전한 수리라 함은 당해 검사 시 완료하는 영구수리로서, 검사원이 만족하고 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<u>지적사항</u>도 남기지 않는 수리를 말한다.</p> <p>14. ~ 16. <현행과 동일></p> <p>103. 수리</p> <p>1. ~ 2. <현행과 동일></p> <p>3. 1항에 명시된 선체구조에서 발견된 손상이 격리된 것이고 선체구조의 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국부적인 것인 경우 검사원은 국제선급연합회(IACS)의 절차요건(PR) No.35 (Procedure for Imposing and Clearing <u>Condition of Class</u>)에 따라 풍우밀 또는 수밀보전성을 다시 확보하기에 적합한 임시수리를 하고 기한을 정하여 <u>지적사항</u>을 지정할 수 있다.</p>	<p>- 용어 통일</p> <p>- IACS UR Z15(Rev.3 May 2019)의 1.3.3을 반영함.</p>

이동식 해양굴착구조물 규칙 적용지침 개정(안)

(최종)

제7장 위험구역에 설치되는 기관 및 전기설비

2020. 1.



기 관 규 칙 개 발 팀

2020.01.01.일자 시행사항

(건조일 기준)

● Res.MSC.435(98) 반영

- 위험구역 인증 장비의 수리, 유지보수 및 분해점검을 수행하는 인원의 자격 기준을 참고하도록 IEC 표준을 명시함.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7 장 <신설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7 장 위험구역에 설치되는 기관 및 전기설비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5 절 위험구역에 설치되는 전기설비</p> <p>502. 전기설비의 보호</p> <p>1. 규칙 502.의 3항을 적용함에 있어, 적합한 인원 자격 기준에 대해서는 다음의 IEC 간행물 또는 동등물을 참조할 것.</p> <p>(1) IEC 60079-14, 폭발성 분위기 - 제14부: 전기설비의 설계, 선택 및 설치</p> <p>(2) IEC 60079-17, 폭발성 분위기 - 제17부: 전기설비의 점검 및 유지보수</p> <p>(3) IEC 60079-19, 폭발성 분위기 - 제19부: 전기설비 수리, 분해점검 및 교정</p>	<p>(신설)</p> <p>- Res.MSC.435(98)을 반영하여, 위험구역 인증 장비의 수리, 유지보수 및 분해점검을 수행하는 인원의 자격 기준을 참고하도록 IEC 표준을 명시함.</p>